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
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,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조정위원, 감정위원 제척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(안 제20조제1항)
- 나.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(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)
- 다. 사고유형 세부인정 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(안 제22조제2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
(법률 제19458호, 2023. 6. 13. 공포, 2023. 12. 14. 시행)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중증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

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0조(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의 제척 등) ① ----- ----- -----.		제20조(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의 제척 등) ①----- ----- -----.		제20조(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의 제척 등) ①----- ----- -----.
<u><단서 신설></u>		<u>다만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 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정한다.</u>		<u>다만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 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정한다.</u>
1. ~ 7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	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		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보상의 범위) 의료사고 보 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		제22조(보상의 범위) ①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 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		제22조(보상의 범위) ①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 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중증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분만 이후 분 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	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중증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분만 이후 분 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

<u><신 설></u>	<u>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</u> <u>부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</u> <u>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
연 락 처	044-202-2474